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내 로펌 최초로 2019년 8월부터 매월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 내용을 분석한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P&B) Report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상임위별 입법현안과 과제를 청취하는 미래리더스포럼을 헤럴드경제와 공동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센터는 주간 입법 동향을 배포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률안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의 사설 및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계류 중인 주요 법률안들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현안 파악과 대응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의 주요 입법 동향을 아래와 같이 공유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P&B Report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P&B Report 구독 문의는 pr@draju.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주요 법안 동향

법안 종류	키워드	주요 법안	주요 내용
발의안	행정/노무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조의 회계감사자 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법적 자격 보유자로 규정하고, 300인 이상 대기업·공기업 노조는 회계 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 제출하도록 함.
	ESG, 에너지인프라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 건축물에 전기저장장치(ESS)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재사용 전기저장장치(R-ESS) 설치 비율을 의무화 함.
국회 계류안	행정/노무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한 노조의 단체교섭·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법 적용 대상을 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확대하도록 함.
공포 법령	ESG, 에너지인프라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내년부터 전기차(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 같은 저공해자동차를 정부가 정한 의무비율만큼 팔지 못한 기업은 매출의 최대 1%를 기여금으로 부담하도록 함.
입법/행정예고	IP	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명 연예인분 아니라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과 이름, 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법에 명시하도록 함.

1. 발의

*각 법률안 및 검토보고서 확인을 위해서는, 법률안 밑에 있는 링크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1	 하태경 (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투명한 재정운동을 위하여 회계감사원에 대해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해당 감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의 자료요구권을 보장하는 한편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감사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재 회계감사원의 자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함. 한편, 행정관청에 대한 자료 보고의 범위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노동조합의 회계부정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회계감사원의 자격을 회계법인·감사반 등으로 한정하고 조합원이 요청할 수 있는 감사자료의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대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의 경우 매년 의무적으로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보고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재정·회계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제2항 등). <p>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E211M1F2R4Y1T5Y0C6E0A6L2W1L6</p>	한국경제 22.12.20. 與, 노동조합 '셀프 회계감사' 막는다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22092541	22.12.20. 제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2	 김정재 (국민의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p>■ 현행법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하 “공공부문”이라 함)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고시에서 규정하여 공공부문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전기저장장치(ESS)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p> <p>그런데 최근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차 등에서 수거 또는 반납되는 폐배터리 발생량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폐배터리의 재사용이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폐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통해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있지만, 폐배터리를 재사용하여 만든 전기저장장치 등 관련 전기용품의 활용·보급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현재 고시에서 규정한 공공부문의 전기저장장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은 재사용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 그 장치를 우선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폐배터리 활용도를 제고하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p>	세계일보 22.12.22. 사용후 배터리 산업 세계시장 선도 이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221516177	22.12.21. 제안

출처: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U2B2Q1P0L2G0V1R5D2Y3Y1Y1H2M7Q0

2. 국회 계류안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3	 <p>이은주 (정의당)</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아울러, 노조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게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p>매일경제 22.12.26. 민노총, 민주당사 기습점거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하라"</p> <p>https://www.mk.co.kr/news/politics/10582687</p>	<p>22.09.14. 제안</p> <p>22.11.17. 상임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p> <p>22.11.30.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2.12.07. 소위 상정/ 축조심사</p> <p>22.12.26. 소위 상정/ 축조심사</p>

번호	제안자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진행 경과
			<p>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p> <p>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p> <p>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 · 조합비 ·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p> <p>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p>		
			출처: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J2K0D8U1G2M1T0X0W7L1F4H8K1J4		

3. 공포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일자
4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p>■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동차판매자로 하여금 전체 차량 판매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저공해자동차로 판매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퍼센트 이하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 기준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매출액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이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기여금의 부과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예시: 2022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2026년도에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 부과됨.</p>	<p>매일경제 22.12.20. 친환경車 판매목표 못채운 기업에 부담금</p> <p>https://www.mk.co.kr/news/economy/10575556</p>	<p>22.12.27. 일부개정</p> <p>22.12.27. 시행</p>

출처: <https://www.law.go.kr/법령/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4. 입법/행정 예고 법령

번호	소관부처	법안명	내용	관련기사	예고기간
5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SNS, 비디오 플랫폼 등 개인간 직접소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유명인뿐만 아니라 누구나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인격표지 자체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산업, 광고·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연예인, 운동선수 등 기존 유명인들의 초상·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도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 권리로서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와 그 보호수단을 기본법인 「민법」에 신설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음. <p>출처: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71439?pageIndex=2</p>	<p>조선일보 22.12.26. 내 목소리·사진도 재산으로 보호받는다... 퍼블리시티권 도입</p> <p>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2/12/26/QRG7F7DPG/BH4XBMF6ANWI/55XWI/</p>	22.12.26. ~ 23.02.06.

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주요 일간지 사설 및 기사

[헤럴드경제][기사]고용부,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죽음의 사업장' 723곳 명단 공개 (2022.12.28.)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221000342>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 2021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명단을 고용부 홈페이지와 관보에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표 대상 사업장은 사망재해 발생 등으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업장 등 723개소.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을 제한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겨레][기사] 기업 설문조사 꺼내들며 '중대재해법 폐지' 주장하는 재계 (2022.12.22.)

<https://www.yna.co.kr/view/AKR20221219043500061?input=1195m>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중소기업 947개·대기업 88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앞서워 “대부분의 기업이 중처법에 대한 대응 여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법 폐지 주장까지 나옴.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조사 결과, 대다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는 기업은 38.8%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재해가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음에도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 규정을 실제 산업현장에서 모두 파악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매일경제][기사] 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필요" (2022.12.22.)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78569&code=11131100&cp=nv>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내 5인 이상 기업 103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81.5%가 중처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조사결과 기업들은 중처법 개선 방향으로 법률 폐지 및 산업법 일원화(40.7%)에 가장 많은 표를 던졌고 이어 법률 명확화 등 법안 개정(35.4%), 처벌수준 완화(20.4%) 등의 순이었음.

또한 조사 대상 대다수 기업이 중처법 시행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중처법상 모든 의무사항을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38.8%에 그쳤음. 최근 중대재해가 사회 이슈화 되면서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령상 모호하고 광범위한 의무규정을 모두 파악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국민일보][기사]위헌 소지 중대재해법... "선례·법원 판단 쌓이면 나아질 것"(2022.12.2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21402300002416?did=NA>

주요내용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기소한 사건 수는 6건인데, 그 중 '1호 기소' 사례였던 D산업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헌성 논란이 생김. D산업은 중처법 제4조1항1호와 제6조2항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관한 조치'라는 내용 등이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피고인 측 논리이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된 처벌 조항 역시 과도하다고 주장함. 한 법조계 인사는 법 시행이 1년밖에 되지 않아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건 사실이라며 선례와 법원 판단이 더 쌓이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함.

담당 변호사 및 전문인력

입법전략센터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0
E : decha@draju.com



박민재
공동센터장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17
E : parkmj@draju.com



최원혁
변호사
T : 02-3016-8737
E : whchoi@draju.com



권기원
공동센터장
T : 02-3016-8743
E : gwkwon@draju.com



이승철
고문
T : 02-3016-8706
E : sclee@draju.com

행정/노무팀



김광수
파트너변호사
T : 02-3016-7405
E : kskim2@draju.com

ESG 자문그룹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76
E : sblee@draju.com

에너지인프라팀



박미현
외국변호사
T : 02-3016-8731
E : mmpark@draju.com

IP팀



최종선
파트너변호사
T : 02-3016-5288
E : jschoi@draju.com

중대재해자문그룹



김영규
파트너변호사
T : 02-3016-8723
E : ykkim2@draju.com